

어학원 한국어과정 운영세칙

제정 : 2016. 12. 09.

담당 : 국제교류팀(02-950-5403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교육과정)	제3조(업무처리)	제4조(관리)
제5조(재정)	제6조(기타)	제7조(입학)	제8조(등록)
제9조(수업료 반환)	제10조(출·결석)	제11조(성적평가)	제12조(진급)
제13조(휴학)	제14조(제적·자퇴)	제15조(이수 및 수료)	제16조(기타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 어학원(이하 “본 원”) 한국어 과정(이하 “본 과정”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교육과정 및 운영

제2조(교육과정) ① 본 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1단계부터 6단계 과정의 세부과정을 둔다
2. 연 4개 과정으로 운영하며, 한 학기의 수업시간은 10주(총 수업시간 160시간)로 운영한다.

제3조(업무처리) 외국인학생의 선발 절차 및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제정한 「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에 따르며,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제정한 「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」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관리) 외국인학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관리 및 출입국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재정)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6조(기타) 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.

제3장 입학 및 등록

제7조(입학)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고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업료 반환) ① 수업료는 다음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 반환한다.

1. 수업료를 과오납한 경우(과오납분 반환)
2.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3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
4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

② 수업료의 반환액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

1. 학기 개시일 이전: 등록금의 100%
2. 학기 개시일부터 7일 이내: 등록금의 70%

③ 환불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환불한다.

제4장 수업 및 성적

제10조(출·결석) ① 지각 3회시에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한다.

② 같은 단계에서 두 번 유급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재등록할 수 없다.

③ 한국어 교육과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재등록할 수 없다.

제11조(성적평가) ① 성적은 중간 및 기말시험 성적, 출석, 수업참여도, 과제물을 합산하여 평가한다.

② 각 단계를 이수하거나 고급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성적이 70점 이상이어도 수업일수 20%이상 결석을 했을 경우 수료가 불가하다.

제5장 진급·제적·자퇴·수료

제12조(진급) 진급은 출석률 80%이상이고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.

제13조(휴학) 본 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제14조(제적·자퇴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2.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

3.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한 자

4.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

②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5조(이수 및 수료) 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을 수여한다.

② 성적 미달이거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하는 경우 성적표만 발급한다.

제16조(기타) 진급은 출석률 80%이상이고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